

프랑스 「반론권」 해설(2)

이 글은 Henri Blin(프랑스 대법원 명예부 재판장), Albert Chavanne(리옹대학교 법경제학부 교수), Roland Drago(파리대학교 법경제학부 교수), Jean Boinet(파리항소법원 감정인, 출판연구 및 법률국 국장) 등 4인의 공저인 「출판법(Droit de la presse: Librairies Techniques, 1982)에서 프랑스의 「반론권」 (droit de réponse)에 관한 해설부분을 번역한 것이며,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14. 조합의 반론권

모든 법인과 같이 조합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반론에 의해 옹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직업적인 경우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간혹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반론권은 사람이거나 법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사람이거나 법인이 옹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와 경찰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반론권 행사의 원인

15. 반론권의 절대적 특성

프랑스 대법원은 1881년 법 이래 반론권리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반론권은 언론의 막강한 힘에 대해 인격을 보호함으로써 신문과 개인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반론권은 문제된 기사의 편집자로 하여금 그 오류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는 반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반론권 행사자가 스스로 반론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이 그 자신이 범한 오류에 대해 스스로 정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 경우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론권은 문제된 내용이 비평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악의에 찬 공격이나 부적절한 평가, 또는 오류나 결함을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당 사자를 공공연하게 칭찬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론권은 어떤 사람이 문제된 정기간행물의 독자들에게 그의 결백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익의 손실과 권리의 침해로 구실로 반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설명해 준다. 판사는 반론문의 게재를 거부한 기자에 대해 단지 경비와 소송에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정치적 논쟁의 기사에 대해서는 관습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문지면은 정치인간 정당간의 상호논쟁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16. 비평기사

과학비평기사와 마찬가지로 문학비평, 예술비평, 연극비평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그와 같은 기사에 관한 반론권의 행사는 예술가나 작가가 반론권의 행사로 광고효과를 얻고자 하거나 극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민반응을 보임으로써 기사를 매우 난처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이나 활동이 공개되어 비평 받고 그 비평에 대해 그들이 목인하는 것을 보아 왔다. 또한 작가가 서평란 담당기자에게 책을 보내거나 초판 발행전에 신문에 자료를 제공하여 그 비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비평은 작품에 관한 것이지 그 작가에 대한 것은 아니다. 비평의 정도가 지나쳐 작가나 예술가를 극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반론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반론권은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가 작가나 예술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원이 왜 항상 반론권을 허용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관대한 판례는 몇몇 사람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반론권의 남용에 의해 언론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작가나 예술가는 매우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만 반론권을 행사한다. 신문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갖고 있다. 즉, 반론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작가나 예술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잔인한 비평보다는 침묵이다.

17. 사법적 판결문

언론이 판결문을 보도했을 경우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원칙은 1881년 7월 29일 법 제 13 조와 34 조의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규정을 강조한 판결에 의해 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틀림없이 까다로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스트(NAST)는 조슬랑(Josserand)의 의견을 근거로 한 판결원리에 관한 단평에서 하나의 가설에 입각하여 반론권의 「무제약성」의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비난했다. 그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 검사,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와 또한 판례집 발행자에 대해서도 반론권리 행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의 신문보도와 판례집의 게재를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반론권리 공공질서와 배치되게 행사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판결문이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되었을 경우이다. 사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반론권 행사로 인해 재판부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반론이 허용될지라도 반론권의 행사로 인해 법원의 권한, 법관의 권한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제 3자의 권리도 신문기자의 명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론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출판물의 경우는 법관모욕에 대해 형법 제 226 조에 근거하여 제소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구별이 필요한 것 같다. 판결문이 정확한 논평과 함께 보도된다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1881년 법 제 41 조가 정확한 보고서와 증거를 갖고 판결문을 보도했을 경우 그에 대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논평없이 단지 판결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검찰과 정부위원의 결정, 법관의 보고서 등)만을 보도했을 경우, 이는 재판공개에 정신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다. 모로코국의 법률은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논평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8. 의회의 토론

의회토론에 관한 정확한 논평보도도 반론의 대상이 된다. 1881년 법 제 41 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은 반론권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비난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제기 가능성과관계가 있을 뿐이다. 어떠한 면책특권도 인정되지 않는 시나 주의 의회토론에 관한 논평보도도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 진실한 반론의 필요성

반론권은 인격권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정인이 반론을 제기하였을 때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근거 없는 비난이나 주장이 담긴 반론은 진정한 반론이라고 할 수 없다. 반론권은 전적으로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경기결과가 운동선수의 이름과 함께 아무런 설명 없이 월요일 아침 스포츠면에 보도되었을 경우, 왜 그들이 졌으며 어떻게 그들 상대편이 이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반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선거 다음날에 득표수, 소속정당명과 함께 당선자의 이름이 보도된 경우, 이에 대한 반론권 행사로 이득을 얻게 될 때는 반론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보도할 때 소송사건에 참여했던 판사와 변호사의 이름을 판결문 미미에 게재하는 것이 상례이다. 변호사가 반론권을 이용하여 왜 그의 고객이 유죄선고를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생각하건대 소송인이 판결문, 판결에 관한 공식문서, 그의 이름을 보도한 법률신문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또 법률은 반론의 계속적인 제기로 어떤 사람에 대한 논쟁을 끝없이 계속하는 것도 권리의 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매번 명예를 훼손함이 없이 제 3자의 이름으로 반론을 계속 제기하는 것도 권리의 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반론의 대상

20. 신문과 정기간행물

제 13 조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제기된 반론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이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회보도, 또한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외국신문(그들 나라에서는 반론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도 포함된다. 발행의 주기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독자에게 배포된 경우에만 반론권리 행사될 수 있는가? 공중에 대한 배포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내부용 회보인 경우에도 반론권리 행사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한 간행물은 공개를 필요로 하는 출판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881년 법 제 13 조는 개인의 권리는 공개된 공중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공중 앞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 같다. 정기간행물로 위장된 사적인 정보문서에 대해서도 반론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종류의 간행물에서도 반론의 제기대상이 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특별히 명백하게 해명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정보문서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공개된 출판물에 가해지는 법률규정을 피하려는 생각은 너무 안이한 방법일 뿐더러 범법행위가 된다.

21. 정기간행물의 내용

반론권은 그림, 사진, 삽화 등에 관한 설명문과 논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의 사실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설명문이나 논평에 인정되는 반론권 행사와는 별개로 그림과 사진에 대해서도 반론권 행사가 인정되는지에 논쟁을 벌이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제 13 조가 반론문에 관한 행의 수와 크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이나 사진에 반론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림 크기만큼의 행수를 기본으로 하여 제 13 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항상 그림과 함께 설명이나 논평이 게재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별로 없다. 반론권은 정기간행물에 실린 광고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신문이 광고문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광고를 게재할 경우, 신문도 민사책임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은 반론권 행사의 가능성에 당면하게 된다. 사실상 신문은 상업적 광고나 사법적 공고를 게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오직 광고주만은 그가 스스로 게재한 광고에 대해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관보

관보의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행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표된 내용이 편집권 행사에 의해 취사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명령에 의해 게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보의 비공식적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권리 행사될 수 있다. 만약 사적 간행물이 관보적 일부분을 재공표한 때에는 법적 명령에 의한 게재의무가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반론권은 행사될 수 있다. 논평 없는 모든 공식문서의 공표와 특히 의회토론에 대한 논평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반론권은 오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23. 비정기간행물

모든 비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론권 자체는 정기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반론권은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책, 작품, 공문, 소책자 등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총서는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송이나 민사책임소송은 가능하다. 더욱이 법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소송이 제기된 때에 명확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시판될 책자 속에 「교정문」의 게재를 명령할 수 있다. 그 「교정문」은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3 장 반론권의 사용

24. 반론권은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출판물의 지면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특수한 권리다. 그러므로 법과 판례가 이 권리의 행사를 세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1 은 반론의 내용 자체에 관해, §2 또는 반론의 범위, §3 은 반론권 행사절차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반론의 내용

25.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반론 게재를 발행인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반론의 강요 받지 않는다.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반론을 게재했을 경우 발행인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반론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신맬더스(Neo-Malthusien)선언문 같은 반론과, 더구나 명예상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론의 게재거부는 합법적이라고 결정되었다. 또한 중죄 또는 위법행위를 선동하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옹호하는 반론의 게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론이 의식을 혼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반론문 게재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6. 제 3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반론

반론이 제 3자의 이익에 반할 경우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발행인은 단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발행인을 고소할 수 없다. 대부분은 악의적인 반론을 게재하기 위해 그럴듯한 동기를 내세운다. 법원은 제 3자의 이익침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며 발행인은 제 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여기서 제 3자는 개인이어야 하고 그들의 이익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3자란 기사를 쓴 기자, 그 기사가 게재된 신문, 그 신문의 이사회가 아니다. 제 3자는 명확하게 지칭되어야 한다. 정부의 특정위원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정부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을 언급한 반론과 마찬가지로 종교단체 또는 몇몇 지방행정부문을 언급한 반론도 게재가 허용될 수도 있다. 반론게재가 거부될 만큼 충분히 제 3자가 거론되었는지의 판단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제 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론의 게재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 3자에 관한 표현이 반드시 모욕적인 비난이나 명예의 훼손일 필요는 없다. 단지 제 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표현이면 된다. 악의적인 비난과, 야유적인 단순한 암시 또는 시의 적절치 못한 누설 등으로도 충분하다. 반론이 게재된 신문을 상대로 제 3자가 민·형사상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한해서 그의 「침해된」 법적 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상 제 3자가 반론문에 거명되었을 경우에, 제 3자가 제기한 반론문이 원반론기사의 확인된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반론은 허용된다. 그러므로 반론권 행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반론문에 제 3자에 대한 언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합법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그 반론문은 게재되어야 한다.

27. 언론인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반론판례에 의하면 언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신문에 자신의 명예나 품위가 훼손되는 내용의 반론게재를 강요받지 않는다. 즉, 언론인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반론이 게재되는 경우, 언론인이 소속사의 신문을 상대로 훼손된 명예를 구제해야 한다는 역설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론권의 한계는 제 3자의 이익에 관한 반론권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실상 자기모순에 빠진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반론을 게재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발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반론이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빈정대는 공격인 경우, 합법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재반론을 인정한다. 이것은 일종의 균형을 허용한 것이며

재반론의 내용이 반론내용의 비난수준을 능가하지 않는다면 이 반론은 당연히 게재되어야 한다. 즉 재반론의 내용에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훼손의 정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반론이 부당하고 공격적이며 악의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반론게재를 거부할 수 없지만, 반론의 표현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경우, 그리고 문제된 공격보다 더 심할 경우, 정기간행물은 반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반론대상이 된 기사를 쓴 사람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 기사가 게재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것이면 반론의 거부는 정당하다. 신문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반론을 게재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제 3 자가 기사를 쓴 사람일지라도 그가 반론게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선동은 명예훼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행위는 아니다. 반대로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이미 명예훼손적인 반론게재를 승인했을 경우, 그는 그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반론은 명예훼손적이라는 것 때문에 게재가 거부될 수도 있었다.

28. 부당한 반론

정기간행물은 문제가 된 반론대상 이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반론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침해된 사항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반론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권리의 남용도 있다. 반론권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29. 반론내용의 통제

앞서 살펴 본 4 가지의 합법적인 반론게재거부의 경우 이외에는 언론인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론을 게재해야 한다. 반론청구인만이 자신의 반론내용의 유일한 심판자다. 반론은 인용문구, 문학작품, 판결문, 또는 기타의 것을 발췌한 내용을 실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반론게재거부가 정당시 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언론인들은 반론의 게재시에도 반론의 정확성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적합한 시기에 반론에 반박할 수 있을 뿐이다. 발행인이 반론게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판하여 그 게재를 거부한 경우, 발행인은 게재거부죄를 범하게 된다. 이 경우 발행인은 형사상의 권리를 정좌하게 판단하지 않고 권리의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반론권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악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반론거부지시를 이사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발행인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히 이사회 임원들까지도 반론게재거부죄에 연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대법원은 반론게재거부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은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채택되었거나 기각된 증거물도 함께 검토한다. 신문사는 반론게재거부로 인해 반론을 게재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끝없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법원은 비합리적인 반론게재거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데 망설여서는 안된다.

(다음호에 계속)